

고령사회 선진국들의 공적연금 개혁 사례 및 시사점

2023. 2. 24

이규성, 박지혜

CONTENTS

I. 연금재정 딜레마와 연금개혁

II. 해외의 공적연금 개혁 방향

1. 연금개혁 과정 및 방향성
2. 연금개혁의 주요 방식
3. 연금개혁의 영향 및 보완 정책

III. 결론

< 요약 >

● 저출생·고령화의 영향으로 국민연금 기금의 소진 시점이 앞당겨지면서, 현행 공적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연금개혁이 다시 논의되고 있음.

● 우리나라보다 먼저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 문제에 봉착했던 고령사회 선진국들은 연금재정 안정과 연금 수급자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양립된 목표의 균형을 고민하면서 오랜 기간동안 거듭해 연금개혁을 추진해 왔음.

- 고령사회 선진국들의 연금개혁 내용은 다음과 같은 모수 개혁에 주된 초점을 두었음.

- ① **보험료율 인상:** 연금재정 수입 확충을 위해 공적연금 보험료율을 지속적으로 인상 (현재 대부분 10%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설정)
- ② **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 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하는 나이를 기존 60세 수준에서 장래 최저 65세~최고 68세로 늦춰 연금재정 지출 지연
- ③ **연금 급여 감액:** 직접 급여 감액, 급여산식의 기준 변경을 통한 감액효과 적용, 급여 상승을 억제하는 자동조절장치 마련 등의 방법을 동원

- 공적연금 개혁에 수반되어진 노후소득 보장성 보장 정책은 특정 취약계층 대상의 기초연금 제도 강화와 일반 국민 대상의 사적연금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추진됐음.

- ① **기초연금 강화:** 저소득층 대상의 기존 기초연금 급여를 인상하거나 가입기간 등의 조건을 충족한 공적연금 급여가 최소보장 기준을 하회할 경우 별도의 연금 지원
- ② **사적연금 장려 정책:** 퇴직연금 등의 자동가입 또는 의무가입을 제도화하고 공적연금 보험료 일부를 사적연금에 적립했으며, 사적연금에 정부가 일정 수준을 기여

● 우리나라도 향후 연금개혁 추진 과정에서 수반될 수 있는 공적연금의 소득보장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적연금의 역할 강화 및 활성화 정책을 함께 마련해 나가야 함.

- 특히 영국(NEST 제도), 독일(리스트어 연금), 스웨덴(premium pension)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퇴직연금 또는 그에 준하는 사적연금의 효과적인 적립을 위한 가입유도장치를 제도화하고, 사적연금의 적립 향상에 필요한 재정적 인센티브 부여 방식이나 비과세 및 공제 등 세제혜택 강화를 다각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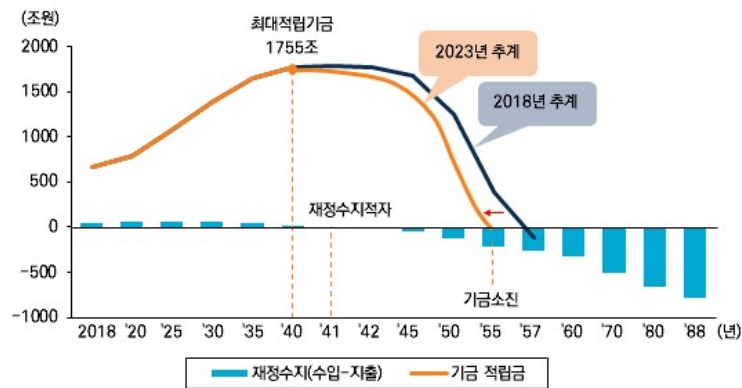
I. 연금재정 딜레마와 연금개혁

● 저출생과 고령화의 가속으로 인해 현행 공적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약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금개혁 논의가 재차 부각되는 상황임.

- 2023년 1월 발표된 국민연금 재정추계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2040년 최대치(1,755조 원)에 도달한 후 2041년부터 재정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지는 재정수지 적자로 전환하고, 2055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됨.

• 저출생·고령화를 필두로 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적립 대비 지출부담이 커짐에 따라 기금 소진 시점은 2018년 추계치보다 2년 앞당겨졌음.

〈도표 1〉 국민연금 재정의 향후 70년간 전망



자료: 국민연금 재정추계(2018, 2023)

● 최근 연금개혁 논의의 주된 배경은 이처럼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 시기가 계속 앞당겨짐으로써 적립금으로부터 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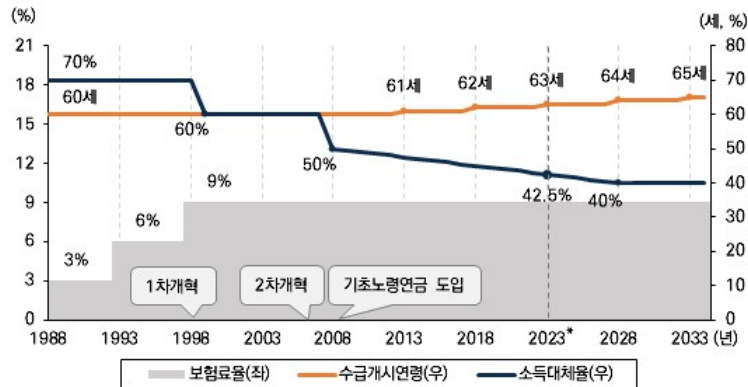
● 국민연금이 1988년 도입된 이후 그동안 기금의 소진 속도를 늦추고자 연금 급여 수준을 단계적으로 낮추고 수급개시연령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두 차례 개혁이 이루어졌으나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는 여전히 주요 과제로 상존하고 있음.

- 1998년에 시행한 1차 개혁에서는 소득대체율*을 70%에서 60%로 낮추고, 수급개시연령은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상향 조정하여 65세까지 연장하였음.

(* 소득대체율은 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이며, 국민연금에서는 가입 기간이 40년일 때를 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을 정하고 있음.)

- 2007년의 2차 개혁을 통해서 소득대체율을 60%에서 50%로 추가 인하한 후 매년 0.5% 포인트씩 낮춤으로써 2028년에 40%가 되도록 하였으며, 노후소득보장 기능 약화의 보완 목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했음.

〈도표 2〉 국민연금 모수조정 연혁



주: 2023년의 국민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은 63세이며, 가입기간 40년 기준의 명목 소득대체율은 42.5%임.
 자료: 국민연금법 연혁법령

- 우리나라보다 먼저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 문제에 봉착했던 고령사회 선진국들은 연금재정 안정과 연금 수급자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양립된 목표의 균형을 고민 하면서 오랜 기간동안 거듭해 연금개혁을 추진해 왔음.
- 이에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개혁 논의가 다시 활발해진 시점에서, 해외 주요국 공적연금의 장기 개혁 방향 및 개혁의 내용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임.
 - 먼저 해외 주요국의 공적연금 제도의 변천 과정을 통해 연금개혁의 장기적 방향이 어떻게 수렴했는지 살펴보고자 함.
 - 또한 주요 연금개혁 방법으로서 1) 보험료율, 2) 연금 수급개시연령 및 3) 급여수준 등 공적연금 제도에서의 모수(母數, parameter)를 조정한 사례를 국가별 비교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함.
- 연금개혁과 더불어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약화에 대한 보완책으로 해외 주요국의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사례를 추가로 살펴보고, 향후 우리나라에서 공적연금 개혁이 추진될 경우 사후 영향 및 대책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함.

II. 해외의 공적연금 개혁 방향

1. 연금개혁 과정 및 방향성

◎ 1889년 독일에서 ‘노령·장애보험’이라는 세계 최초의 공적연금이 탄생한 이래로, 서구 선진국의 공적연금 제도는 1940~70년대에 주된 확장기를 거쳤으며, 1980년대 이후부터는 축소 및 조정 과정을 겪고 있음.

- [도입기] 독일을 시작으로 영국과 캐나다(1908년), 스웨덴(1913년), 미국(1935년) 등 서구 선진국들은 1890~1930년대 중 순차적으로 공적연금 제도를 도입하였음.

- [확장기] 1940~1970년대는 공적연금 제도의 본격적인 확장기로, 이 시기에 유럽 국가들은 저마다 복지국가를 지향하면서 가입자의 연금 급여를 인상하고, 기초연금 제도 도입을 통해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등으로 공적연금 제도를 활성화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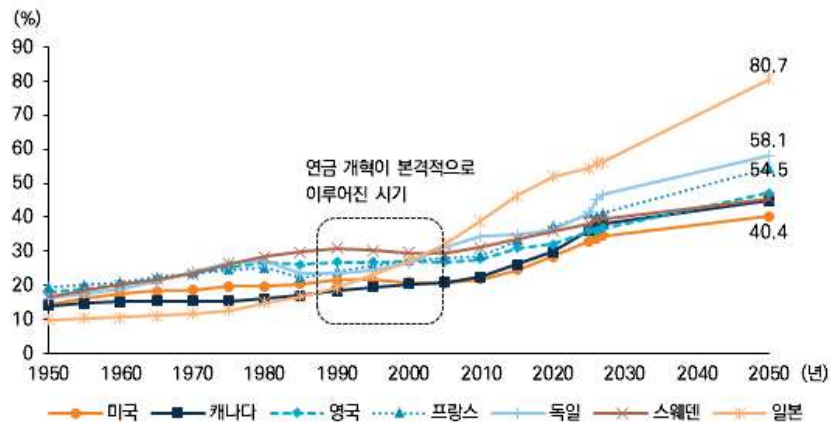
- [축소·조정기] 해외 주요국의 공적연금 제도는 1980년대 이후 현재까지 축소 및 조정기를 거치고 있는데, 이는 경제성장 둔화와 인구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연금재정 부담이 커졌기 때문으로 불가피하게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공적연금 제도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음.

◎ 1980년대 들어 경제성장 둔화 및 인구 고령화로 인해 공적 연금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위협이 커지자 주요국은 연금재정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음.

- 주요국들은 노년인구부양비율*이 20%를 상회했을 때 공적연금 개혁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러한 개혁을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음.

(* 20~64세 생산연령인구 100명 당 부양해야 할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

〈도표 3〉 주요국의 노인인구부양비율 추이



자료: OECD stat

◎ 주요국의 연금개혁은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료율, 연금 수급개시연령 및 급여수준 등의 변수를 조정하는 방식(모수개혁)을 주로 취하였음.

－ 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변수만을 조정하는 모수개혁 방식과 함께 제도 자체를 변경하는 구조개혁*을 시행하기도 했지만 이 경우에도 실질적으로는 연금 가입자가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을 늦게 받게 것을 골자로 한 조정이 동반되었음.

(*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의 다층 소득보장체계를 정비 혹은 재배치하거나 각 연금별 기능 및 역할을 변경하는 등 연금제도의 구조를 크게 변경하는 것)

· 스웨덴과 영국의 경우 각각 1998년, 2014년에 연금제도 관련 구조개혁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공적연금의 보험료율을 높이거나 연금 수급개시연령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연금 가입자에게 가해지는 부담이 커지는 방향으로 제도를 수정하였음.

－ 프랑스의 경우 보험료율, 연금 수급개시연령 및 급여 등의 변수 조정 방법 외에 연금 납입기간을 연장하는 개혁을 두 차례에 걸쳐 진행(1993년, 2003년)했으며, 이 결과 완전연금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연금납입기간은 연금개혁 이전 37.5년에서 연금개혁 이후 42년으로 연장되었음.

(* 연금납입기간과 수급개시연령을 동시에 충족할 때 받을 수 있는 기본연금액)

· 프랑스는 2023년 현재 연금납입기간을 기존 42년에서 43년으로 1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음.

2. 연금개혁의 주요 방식

- ◎ 해외 주요국의 공적연금 개혁 사례를 살펴보면 연금개혁의 방법은 1) 가입자가 부담(기여)해야 할 보험료를 높이는 것, 2) 연금의 수령 시기를 늦추는 것, 3) 연금 급여를 축소하는 것 등 3가지 측면으로 분류되는 한편, 이들을 함께 추진하기도 하였음.

〈도표 4〉 1980년 이후 주요국의 공적연금제도 개혁 내용 및 시기

국가	보험료를 인상	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	연금 급여수준 하향
미국	1983년	1983년	-
캐나다	1998년, 2016년*	-	-
영국	△**	1995년, 2007년, 2011년, 2014년	2011년
프랑스	△**	1993년***, 2003년***, 2010년	1993년
독일	△**	1992년, 2007년	1992년, 2001년, 2004년
스웨덴	1998년	2020년	1998년
일본	2004년	1994년, 2020년	2004년

* 캐나다 정부는 공적연금 보험료를 인상과 함께 연금 급여수준도 상향 조정함(40년 가입자 기준 소득대체율: 2018년 25%→2025년 33%).

** 영국, 프랑스, 독일은 기금적립 방식이 아닌 부과방식의 공적연금 제도를 운용하여 당해 보험료를 유동적으로 책정하는데, 실제로는 보험료율이 장기간에 걸쳐 인상되는 추세임.

*** 프랑스는 연금납입기간 연장으로 연금지급 시기를 늦춤.

〈공적연금의 재정방식〉

- ◎ 부과방식(pay-as-you-go system):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 주요국이 시행
 - 원칙적으로 적립금을 두지 않고 당해 연도의 필요 급여재원을 당해 연도 가입자에게 부과하는 기여 또는 세금으로 조달하는 방식
- ◎ 완전적립방식(fully funding system): 칠레, 페루 등에서 시행
 - 보험수리상의 공평한 보험료를 제도 도입 초기부터 일관성 있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민간기업의 연금 상품에 적용되는 보험수리를 원용한 방식
- ◎ 부분적립방식(partially-funded system): 미국, 캐나다, 일본(후생연금), 한국 등에서 시행
 - 초기에 보험수리상의 공평한 보험료보다 낮은 수준의 보험료를 통해 부분적립하다가 적립금의 지속가능성이 우려되는 시점부터 보험료를 인상해나가는 방식

1) 보험료 인상

◎ 주요국들은 연금재정 수입을 확충하기 위해 가입자와 고용주가 부담해야하는 보험료에 대한 요율을 지속적으로 인상하여, 현재 공적연금 보험료율을 대부분 두 자리수(10% 이상)로 설정해 놓고 있음.

– 대표적으로 미국, 캐나다, 스웨덴, 일본 등에서 공적연금의 보험료율을 여러해 동안 지속적으로 인상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음(<도표 5> 참조).

– 지속적인 인상 결과, 현재 미국(12.4%), 캐나다(11.9%), 스웨덴(18.5%), 일본(18.3%) 등 주요국에서 10%를 상회하는 공적연금 보험료율이 적용되고 있음.

<도표 5> 1980년 이후 주요국의 공적연금 보험료율 인상 추이

국 가	개정 연도	내 용
미국*	1983년	10.8%(1983년)에서 12.4%(1990년)로 인상
캐나다	1998년	6%(1997년)에서 9.9%(2003년)로 인상
	2016년	2019년부터 점진적으로 인상하여 2023년에 11.9%로 책정
스웨덴	1998년	13%에서 18.5%로 인상 (그 중 2.5%는 수익연금으로 환입)
일본	2004년	2004년 13.934%에서 2017년 18.3%까지 지속적으로 인상

* 미국은 1983년 공적연금 재정방식을 부과방식에서 적립방식으로 변경하여 보험료율을 유동형에서 고정형으로 바꾸고, 이후 1988년까지 보험료율을 지속 인상했음.

2) 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 조정

◎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주된 방안은 장래에 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하는 나이인 수급개시연령을 연장하는 것으로, 연금개혁을 추진한 주요국들은 대체로 기존 60세 수준에서 최저 65세에서 최고 68세까지 장래 연금 개시시기를 늦춰 연금재정에서의 주요 지출을 지연시켜왔음.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일본 등 주요 주요국들이 공적연금의 장래 수급개시연령을 65세에서 최고 68세(영국)까지 상향 조정하는 일정을 최근까지 확정하였음.

– 이중 스웨덴은 특히 기대수명 연장 등의 변화에 연동하여 연금 수급개시연령이 자동적으로 조정되는 장치를 도입함으로써 차후 별도의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수급개시연령이 늦춰지도록 하였음.

〈도표 6〉 1980년대 이후 주요국의 공적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 조정

국 가	개정연도	내 용
미국	1983년	2019년 66세에서 2027년까지 67세로 상향
영국	1995년	2010년부터 2020년까지 60세에서 65세로 상향(여성)
	2007년	2024~26년에 66세로, 2034~36년에 67세로, 2044~46년에 68세로 점진적으로 상향
	2011년	2018~20년에 걸쳐 66세로 상향하여 2007년 수급개시연령 상향 일정을 앞당김
	2014년	2026~28년에 걸쳐 67세로 상향하여 2007년 수급개시연령 상향 일정을 앞당김 5년마다 정기적으로 수급개시연령 상향 조정 검토
프랑스	2010년	65세에서 67세로 상향
독일	1992년	63세에서 65세로 상향
	2007년	2012년부터 2029년까지 65세에서 67세로 상향
스웨덴	2020년	2020년 62세에서 2024년까지 64세로 상향 2026년부터는 기대수명에 따라 수급개시연령이 자동 조정되도록 설계
일본*	1994년	후생연금 정액부분의 수급개시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2020년	후생연금 비례부분의 수급개시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 일본의 경우 2020년부터 수급개시연령을 75세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조정함(수급개시연령은 65세 동일).

3) 연금 급여 감액

● 주요국들은 가입자의 연금 급여를 감액하여 연금재정 지출 부담을 줄였는데, 이 때 1) 급여의 직접 감액, 2) 급여산식에서의 기준 변경을 통한 감액 효과 적용, 3) 급여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자동조절장치 마련 등의 방법이 활용되었음.

－ [급여의 직접 감액] 독일은 2001년의 개혁을 통해, 보험료율의 인상을 자제하는 대신 소득대체율이 이전 수준 대비 4% 포인트 낮아질 수 있도록 연금 급여를 감액하였음.

－ [급여산식 기준 변경을 통한 감액] 독일의 1992년 개혁에서는 연금 급여산식에서의 기준을 세전 소득 대신 이보다 적은 액수의 세후 가처분소득으로 변경하여 실질 급여를 낮췄음.

또한 영국의 경우 2011년 개혁을 통해 연금 급여의 인상률이 연동되는 기준을 기존 소매물가상승률에서 변동성이 보다 적은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임금상승률과 2.5% 중 최대치를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함으로써 연금 급여의 장기적 상승을 억제하였음.

－ [자동조절장치를 통한 감액] 스웨덴은 연금부채가 연금자산을 초과할 경우 급여 감액이 이루어지게 했고(1998년), 독일은 인구고령화가 심화될수록 급여가 감액되는 구조를 수립했으며, 일본도 기대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급여 상승이 억제되도록 조정하는 조절장치를 마련하였음(각각 2004년).

〈도표 7〉 1980년대 이후 주요국의 공적연금 급여수준 하향 조정

국 가	개정연도	내 용
영국	2011년	연금 급여 인상률을 기존의 소매물가상승률에 연동시키는 대신 소비자 물가상승률 및 임금상승률과 2.5% 중 높은 수치를 연동시켜 장기적으로 억제(Triple lock 제도)
프랑스	1993년	연금급여의 연동기준을 물가상승률에서 임금상승률로 변경하고, 급여계산의 기준임금을 10년 평균 임금에서 25년 평균 임금으로 늘려 상승 억제
독일	1992년	급여산식에서의 기준을 세전 소득에서 세후 가처분소득으로 변경
	2001년	보험료 상승을 억제하는 대신 소득대체율을 4% 포인트 낮추도록 급여 감액
	2004년	인구고령화가 심화될수록 연금급여가 감액되게 급여산식에 반영
스웨덴	1998년	연금재정 상태에 따라 연금급여가 연동되며, 연금부채가 연금자산을 초과할 경우 소득대체율이 자동적으로 감소하도록 설계
일본	2004년	기대수명 연장과 출산율 감소 등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자동적으로 감액하는 자동조절장치(거시경제 슬라이드) 도입

3. 연금개혁의 영향 및 보완 정책

1) 연금개혁의 영향

● 공적연금의 개혁 방향에서 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 및 연금재정의 안정화가 우선시 되면서, 일부 국가들에서는 공적연금 급여수준이 하락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음.

－ 주요국들은 공적연금의 개혁을 통해 정부 및 연기금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평가됨.

· 연기금을 보유하고 있는 캐나다*와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면, 캐나다 국민연금의 적립배율(연금지출 대비 연금자산)은 2019년 7.5배에서 2095년 9.5배로 증가할 것으로 추계됐고, 일본 후생연금의 적립배율은 2115년까지 1배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추계되었음.

(* 캐나다의 경우 2019년의 국민연금 제30차 재정추계 결과에서 보고되었으며, 일본은 공적연금의 2019년 재정검증을 통해 추계 결과를 보고)

· 부과방식의 공적연금 제도를 운영 중인 스웨덴의 경우 정부의 공적연금 재정지출 비중이 2018년 7.6%에서 2050년 7.0%로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연금개혁으로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제고된 데 대한 반대급부로 가입자가 받게 되는 공적연금 급여의 소득대체율은 주요국들에서 장기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형편으로,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은 약화되고 있는 상황임.

- 영국, 독일, 일본,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의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소득대체율이 하락하지 않고 있는 미국 및 프랑스의 경우도 연금재정의 건전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추가 대응 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

(* 미국 의회예산국은 2020년 사회보장기금 추계를 통해 기금고갈 시기가 2031년으로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해 우려를 제기하였고, 프랑스 정부는 연금재정의 적자규모가 2023년 2억 유로에서 2027년 103억 유로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

〈도표 8〉 주요국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추이 및 현황

(단위: %)	영국	캐나다	독일	일본	미국	스웨덴	프랑스
2009년	30.8	44.5	43.0	33.9	38.7	37.8	53.3
2021년	21.6	38.8	41.5	32.4	39.2	41.3	60.2

자료: OECD Pension at a glance (2009, 2021)

2)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약화에 따른 대책

- 연금개혁으로 비롯된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약화는 1) 저소득층을 위한 기초연금 강화와 2) 일반 국민에 초점을 둔 사적연금 장려 정책을 통해 주로 보완(영국, 독일, 스웨덴 등이 대표적)되었음.

- [기초연금 강화] 저소득층에 한정하여 연금 급여를 높여주거나 별도의 보충연금을 신설해 공적연금 개혁으로 야기된 노인빈곤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음.

- 영국은 2016년에 신국가연금을 도입했는데, 이를 통해 이전부터 존재한 기초연금 제도에서 제공하던 급여보다 1.3~1.6배 높은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연금 급여를 인상하였음.

- 독일과 스웨덴의 경우 연금 수급자가 받는 급여가 일정 기준보다 낮으면 별도의 보충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하였음.

- 독일은 일정기간(33년) 이상 가입한 사람의 공적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2023년 기준 단독 수급자 181만 원, 부부수급자 283만 원)보다 적을 경우 정부가 추가로 연금을 보조해 지급하는 기본연금 제도(Grundrente)를 2021년에 신설함.

- 스웨덴은 1998년에 보증연금 제도(Guaranteed minimum pension)를 도입하여, 65세 이상 공적연금 수급자의 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2021년 기준 단독 수급자 월 198만 원, 부부 월 180만 원) 미만일 때 정부가 연금을 추가 지급하도록 함.

◎ [사적연금 장려 정책] 사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정부가 사적연금을 기여금을 보조해주는 방식을 도입하였음.

- 영국은 2012년부터 사용자에게 모든 근로자에 대한 연금계좌 개설을 의무화했으며, NEST(National Employment Saving Trust) 제도를 통해 정부가 기여금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사적연금 활성화를 지원함.
 - 영국의 NEST 제도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보험료율 4% 및 3%를 연금계좌에 기여하면, 정부가 소득세의 일부(보험료율 1% 수준)를 근로자의 연금계좌에 환급해주는 형태로 운영됨.
- 독일은 정부가 기여금을 보조하는 방식을 도입한 사적연금으로서 리스터연금 제도(Riester Rente)를 신설해, 공적연금 개혁으로 인한 노후소득보장 공백을 해소하도록 하였음.
 - 독일은 2001년 공적연금 급여의 감액을 추진하면서 그에 대한 보완책으로 정부가 개인연금에 기여금을 보조하는 방식의 리스터연금 제도를 도입하였음. 정부의 기여금은 가입자의 소득과 자녀유무에 따라 달리 지급*됨.
 - (* 정액수당으로 연간 175유로가 기본 적립되고 소득 수준에 따른 세금환급 효과가 누적되는 구조이며, 자녀수당으로는 한 명당 연간 300유로를 별도로 책정하여 지급)
- 스웨덴은 1998년에 수익연금(premium pension) 제도 도입을 통해 소득의 2.5%에 해당되는 만큼을 개인연금에 저축해 스스로 운용하도록 하여 사적연금의 활성화를 장려함.
 - 1998년 연금개혁을 통해 공적연금 가입자가 납입하는 보험료(18.5%) 중에서 16%는 당해 공적연금 지출 재원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5%는 개인연금 계좌에 적립하여 가입자가 직접 운용하도록 하였음.

〈도표 9〉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약화에 대한 보완 정책

기초연금 강화	사적연금 장려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 대상의 기존 기초연금 급여 인상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의 자동가입 또는 의무가입 (영국, 스웨덴) 및 공적연금 보험료 일부를 사적연금에 환입 (스웨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기간 등의 조건을 충족한 공적연금 급여가 최소보장 기준을 하회할 경우 정부가 추가 급여 지급 (독일, 스웨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적연금에 정부가 일정 수준의 보조금 기여 (영국, 독일)

III. 결론

- 서구 선진국들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장기적인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맞춰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공적연금을 개혁하였음.
- 연금개혁으로 인해 가입자가 대체로 종전보다 더 큰 적립부담을 가지며, 더 적은 연금을 나누어 받게 됨에 따라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은 불가피하게 약화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됨.

〈고령사회 선진국들의 주된 공적연금 개혁 성격 및 방향〉

연금개혁 동기	연금개혁의 주된 내용	연금개혁의 영향
연금재정 지속가능성 제고	1) 보험료율 인상	가입자와 사용자 적립 및 기여 부담 증가
	2) 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	공적연금의 소득대체 효과 감소
	3) 연금 급여 감액	

- 우리나라 역시 경제성장 둔화 및 인구고령화에 대응해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야 하는 입장에서 연금개혁 논의를 재개하고 있음.
- 향후 개혁 진행과정에서 연금재정의 안정과 가입자의 연금 수급 측면에서의 노후 소득 보장성 간의 상충을 조율하고, 균형점을 면밀히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임.
 - － 적립 측면에서 9%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해외 주요국의 공적연금 보험료율(대체로 12~18% 선)보다 뚜렷하게 낮은 형편이며, 연금 수급 측면에서는 연금 급여 등을 감액하기에는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소득대체율은 31.2%로 보장성이 높다고 할 수 없으므로 연금개혁을 추진할 경우 모수 조정에 있어 균형점을 면밀히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연금개혁을 추진하면서 수반될 수 있는 공적연금의 소득보장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적연금의 역할 강화 및 활성화 정책을 함께 마련해 나가야 함.
 - － 특히 영국(NEST 제도), 독일(리스터 연금), 스웨덴(premium pension)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퇴직연금 또는 그에 준하는 사적연금의 효과적인 적립을 위한 가입유도장치를 제도화하고, 사적연금의 적립 향상에 필요한 재정적 인센티브 부여 방식이나 비과세 및 공제 등 세제혜택 강화를 다각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OECD]

OECD(2009, 2021), Pension at a glance

OECD(2019), Financial incentives for funded private pension plans

[한국]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2018),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장기재정전망 결과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2023),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재정추계 시산결과

[미국]

국민연금공단(2005), 미국 연금제도(OASDI)

김원섭(2019), 주요국의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 수급요건에 관한 연구. 국회예산정책처 용역보고서

김태근(2022), 미국 공적연금 개혁 논의의 쟁점. 국제사회보장리뷰 2022 가을호 Vol. 22, pp.143-151

미 연방 사회보장국 홈페이지(www.ssa.gov)

[캐나다]

김원섭(2019), 주요국의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 수급요건에 관한 연구. 국회예산정책처 용역보고서

이미연(2021), 주요국의 공적연금 개혁사례(캐나다). 국회예산정책처 NABO 재정추계&세제 이슈 2021년 Vol.4

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2019), Actuarial Report(30th) on the Canada Pension Plan

[영국]

김원섭(2019), 주요국의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 수급요건에 관한 연구. 국회예산정책처 용역보고서

이미연(2022), 주요국의 공적연금 개혁사례(캐나다). 국회예산정책처 NABO 재정추계&세제 이슈 2022년 Vol.1

정인영·정창률·권혁창(2020),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변화-영국의 공·사적 연금제도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36권 2호, pp.22-49.

Martin Powell(2017), Austerity in UK Social Policy: Glass 'half full' or 'half empty'?.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제사회보장리뷰 2017년 겨울호

Carl Emmerson(2020), COVID-19 will bring forward the date when the pensions triple lock is picked. Institute for Fiscal Studies

영국 정부 홈페이지(www.gov.uk)

[프랑스]

류건식(2012), 프랑스 연금개혁의 동향과 시사점. 보험연구원 KiRi포커스 175호

양승엽(2011), 프랑스의 2010년 연금 개혁의 원인과 사후 경과.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2011년 2월호

유호선(2011), 비스마르키안 국가들의 연금개혁 동향. 국민연금연구원 연금포럼 2011년 봄호
프랑스 정부 보도자료(2023), Pour Nos Retraites: justice, équilibre, progrès (2023년 공적연금 개혁안)
프랑스 정부 홈페이지(www.gouvernement.fr)
프랑스 공공정보 사이트(www.vie-publique.fr)

[독일]

국민연금연구원(2012), 독일의 공적연금제도
류건식·김대환·이상우(2011), 보험회사의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보험연구원 경영보고서 2011-7
박연서(2022), 주요국의 공적연금 개혁사례(독일). 국회예산정책처 NABO 재정추계&세계 이슈 2021년 Vol.1
유호선·유현경·손현섭(2021),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방안 연구. 국민연금연구원 연구보고서 2021-15
Börsch-Supan, A., Coppola, M., & Reil-Held, A. (2012), Riester pensions in Germany: design, dynamics, targeting success and crowding-in (No. w18014).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Börsch-Supan, A. & Quinn, C. (2015), Taxing Pensions and Retirement Benefits in Germany. CESifo Working Paper No. 5636.
Wilke, C. (2018) German Pension Reform: On Road towards a Sustainable Multi-Pillar System. Peter Lang International Academic Publishers.

[스웨덴]

김우람(2020), 우리나라와 OECD 주요국의 연금개혁 동향. 국회예산정책처 NABO 재정추계&세계 이슈 2022년 Vol.4
유호선·유현경(2018), 국민연금의 명목확정기여방식 도입 타당성 분석. 유럽연구 제36권 3호, pp.253-294.
이미연(2021), 주요국의 공적연금 개혁사례(스웨덴). 국회예산정책처 NABO 재정추계&세계 이슈 2021년 Vol.3
최수지(2017), 스웨덴 연금개혁 고찰에 따른 시사점. 사학연금연구 제2호, pp.243-274.
Swedish Pension Agency, Orange Report(2020)
스웨덴 연금청 홈페이지(<http://www.pensionsmyndigheten.se>)

[일본]

이미연(2021), 주요국의 공적연금 개혁사례(일본). 국회예산정책처 NABO 재정추계&세계 이슈 2021년 Vol.3
성혜영(2016), 일본 공적 연금제도의 급여 자동조절 장치 운영현황. 국민연금연구원 월간 연금이슈&동향분석 제33호
전창환(2021), 2019년 일본 공적 연금의 재정 검증: 기본 틀과 주요 내용, 그리고 시사점. 동향과 전망 제113호, pp.254-290.
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www.mhlw.go.jp)

평안한 노후를 위한 자산관리 5원칙

변화된 환경 속에서 자산을 성공적으로 운용하고 평안한 노후를 준비하려면 지금까지 익숙했던 것과 다른 자산관리 원칙이 필요합니다.

01 글로벌로 분산투자 해야 합니다.

저성장 고령화로 인해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경우 기대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노후자산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글로벌 분산투자가 필요합니다.

02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량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노후자산은 장기간 운용해야 하므로 사회·경제적 트렌드의 변화에 맞는 우량자산을 선별하여 투자해야 합니다.

03 안정성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집중투자에 따른 손실은 장기 투자로도 회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노후자산을 '자산군 간, 자산군 내, 지역별' 이렇게 3중으로 철저하게 분산해야 합니다

04 질병·사고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질병 및 사고는 노후자산의 형성을 막고 소진을 앞당기는 원인으로 작용하므로, 보장성 보험 등을 통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05 적립에서 인출까지 통합적 관점에서 운용되어야 합니다.

길어진 수명과 낮아진 금리는 노후자산 관리에 있어서 새로운 생각을 요구합니다. 자산규모보다는 현금흐름을 중시하는 관점을 가져야 하며, 자신에게 맞는 인출계획을 세우고 적립 시기부터 그에 맞게 노후자산을 운용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사회와 가계는 큰 변화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유례 없는 초저금리시대가 도래하면서 자산운용방식에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저성장과 고령화로 연금자산관리의 중요성은 커졌습니다.

투자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미래에셋투자자산운용센터는 고객의 평안한 노후에 기여한다는 미래에셋그룹의 비전 하에 투자와 연금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연구,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투자자산운용센터는 투자와연금리포트를 통해 투자 및 연금 분야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심도 깊은 분석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미래에셋투자자산운용센터 리포트 지난 호

... 이전 생략...

- [48] 변액보험 펀드 수익률 분석 및 시사점, 2020.11
- [49] FAANG을 넘어 BBIG로, 2020.11
- [50] 저금리·장수시대의 도래와 美 연금시장의 대응, 2020.12
- [51] 5가지 키워드로 본 밀레니얼 세대의 투자와 미래, 2020.12
- [52] 코로나19가 가져온 퇴직연금 시장의 5가지 변화, 2021.11
- [53] MZ세대의 은퇴인식과 퇴직연금 운용 트렌드, 2021.12
- [54] 늦어지는 은퇴, 생애주기수지 적자에 대비하라, 2022.3
- [55] 적립금운용위원회와 IPS 도입, DB 적립금 운용을 리셋하다, 2022.4
- [56] 은퇴준비를 위한 인출계획 수립과 인출계획서 활용, 2022.9
- [57] 3050 직장인의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선택의 5가지 특징, 2022.11
- [58] 대한민국 4050 직장인의 은퇴자신감 서베이, 2022.11
- [59] 근로자 속성 및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선택 경향 분석, 2022.11

투자자산운용리포트는 미래에셋투자자산운용센터 홈페이지(investpension.miraeasset.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투자 판단의 참고사항이며,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열람하시는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작성자 개인의 의견으로 미래에셋투자자산운용센터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본 보고서는 미래에셋투자자산운용센터의 저작물이므로 사전 동의 없이 무단전재·복제를 금지합니다.
보고서 내용을 인용·전재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미래에셋투자자산운용센터에 문의해 주십시오.